선람	기관의장

595호 2020년 7월 30일

익산시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자 : 익 산 시 청
발 행 처 : 홍보담당관

조 례

• 익산시 조례 제2013호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1

고 시

• 익산시 고시 제2020-116호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고시 ······ 5
• 익산시 고시 제2020-117호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고시 ······ 6
• 익산시 고시 제2020-118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 7
• 익산시 고시 제2020-12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9
• 익산시 고시 제2020-1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10
• 익산시 고시 제2020-125호 제8기 익산시 지역사회보장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 고시 ······ 16

회람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0-1828호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2
- 익산시 공고 제2020-1838호 익산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34
- 익산시 공고 제2020-1876호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44
- 익산시 공고 제2020-1890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4
- 익산시 공고 제2020-1902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5
- 익산시 공고 제2020-19906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0
- 익산시 공고 제2020-1940호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75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0년 7월 30일

익산시 조례 제2013호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통보ㆍ개선요구 및 권고 등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
2. 위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임기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고시 제2020-116호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고시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일

익 산 시 장

1. 사업명칭 :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 사업목적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3. 사업위치 :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
4. 사 업 비 : 3,980백만원(국비 2,786 / 지방비 1,194)
5.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6. 주요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 : 탑마을문화센터, 건강교류센터, 주차장 및 진입로
   나. 지역경관개선 : 힐빙산책공원, 다목적체험마당, 방문자쉼터
   다.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운영지원 등
7. 사업 시행자 : 익산시장(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일괄 위·수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063-859 -7223) 및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063-860-0058)에서 열람 가능

익산시 고시 제2020-117호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고시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일

익 산 시 장

1. 사업명칭 :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 사업목적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3. 사업위치 :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일원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 지방비 1,200)
5.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6. 주요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 : 복지행복센터, 주차장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나. 지역경관개선 : 함라산 행복길 정비, 중심테마거리 조성
   다.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운영지원 등
7. 사업 시행자 : 익산시장(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부분 위·수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063-859 -7223) 및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063-860-0058)에서 열람 가능

익산시 고시 제2020-118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30.

익 산 시 장

1. 목 적

○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 번	시설명	주소	보호구역지정구간	비고
1	샛별 유치원	전북 익산시 선화로2길 28-8	50m	신규지정
2	샛별 어린이집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 교통행정과 (☎063-859-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 지정대상 시설명 : 샛별유치원, 샛별어린이집	▪ 구분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익산시 고시 제2020-12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

익 산 시 장

1. 사 업 목 적 : 개전
2. 사 업 내 용 : 임야를 농지로 조성
3. 사 업 비 : 금104,000,000원
4.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 ~ 2020년 9월 30일
5. 사 업 효 과 : 농업생산기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6. 사업시행자
   ○ 주 소 : 익산시 여산면 옥금동길 *
   ○ 성 명 : 정 찬 *
7. 사업의 구역

토지소재지				지적(㎡)		인가면적(㎡)		지목	비고
읍·면	리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여산	제남	산113	672-1	4,264	4,317	3,543	3,345	임	

익산시 고시 제2020-1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 063-859-5927)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2. 사업주체 : ㈜한국토지신탁 대표 최윤성
3. 위 치 : 익산시 마동 170-1 외 29필지
4. 사업내용

가. 대지면적 : 9,720㎡

나. 건축면적 : 2,352.2340㎡

다. 연 면 적 : 30,641.8236㎡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20층, 주3/부11, 223세대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바.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분양

사. 사 업 비 : 56,313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17. 12. ~ 2020. 8.

5.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대지면적	9,743.0㎡	9,720.0㎡	지적분할측량에 따라 23.0㎡감소
준공예정일	2020. 07. 31.	2020. 08. 17.	사업기간 연장
기 타	실시계획인가 변경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준공예정일)		

6. 변경승인일자 : 2020. 07. 17.

7.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익산시 주택과 비치)

8. 의제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지형도면의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544	감)25	10,529	100.0	
주거지역	소계	10,544	감)25	10,529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544	감)25	10,529	100.0	

※ 지적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 정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29	마동 신기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일원	10,544	감)25	10,529	-	

※ 공동주택 부지 : 9,720㎡, 도로부지 : 80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9	마동 신기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면적 : 10,544㎡ ⇒ 10,529㎡ - 위치 :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일원	• 구역 경계부의 지장물(주택 등) 제척을 위한 분할측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면적의 변경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3	25~26.5	보조간선	2,130 (49)	마동 187-7	어양동 405-8	일반도로		건설부고299 (86.7.4)	
기정	소로	1	302	10~11	국지도로	159 (41)	대로3-3 마동 173-3 답	소로3-331	일반도로		전북44 (77.3.7)	
기정	소로	3	830	5~6	국지도로	113	소로 1-302	마동 170-2전	일반도로		익산시 고시 (18.1.30)	

※ (　　)안은 지구단위계획 구간 연장임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29	합 계	10,554	10,529	-	10,554	감)25	10,529	
	1-1	9,743	9,720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일원	9,743	감)23	9,720	공동주택
	1-2	648	647	익산시 마동 170-56번지 일원	648	감)1	647	도로
	1-3	115	115	익산시 마동 171-1번지 일원	115	-	115	도로
	1-4	48	47	익산시 마동 166-22번지 일원	48	감)1	47	도로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29	익산시 마동 170번지 일원	용도	지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 지정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0층 이하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기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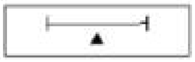 차량출입허용구간	마동 170-41번지 인근	· 차량출입허용구간 - 소로1-302호선변 일부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주출입구 이외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 주출입구 이외 구간 대로3-3호선변과 그 외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4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실음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대로3-3 도시계획도로 편입면적

NO	지번	지목	당초공부 면적(㎡)	당초편입 면적(㎡)	분할 지번	지목	분할공부 면적 (㎡)	변경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1	168-8	도	1	1	168-8	도	1	1	익산시	
2	169-6	대	13	13	169-6	대	13	13	㈜한국토지신탁	
3	169-7	도	19	19	169-7	도	19	19	㈜한국토지신탁	
4	325-85	도	26	26	325-89	도	26	26	국(건설부)	지번오류 정정
당초 합계			59	59	변경 합계		59	59		

■ 소1-302 도시계획도로 편입면적

NO	지번	지목	당초공부 면적 (㎡)	당초편입 면적 (㎡)	분할 지번	지목	분할공부 면적 (㎡)	변경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1	170-72	전	11	11	170-72	전	11	11	㈜한국토지신탁	
2	170-73	대	12	12	170-73	대	12	12	㈜한국토지신탁	
3	170-76	도	48	8	170-76	도	48	8	익산시	
4	170-78	도	4	4	170-78	도	4	4	㈜한국토지신탁	
5	171-9	대	21	21	171-9	대	21	21	㈜한국토지신탁	
당초 합계			96	56	변경 합계		96	56		

■ 소1-830 도시계획도로 편입면적

NO	지번	지목	당초공부 면적 (㎡)	당초편입 면적 (㎡)	분할 지번	지목	분할공부 면적 (㎡)	변경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1	170-66	대	24	24	170-66	대	24	24	㈜한국토지신탁	
2	170-67	전	7	7	170-67	전	6	6	㈜한국토지신탁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170-11	도	228	15	170-11	도	228	15	익산시	
4	170-32	도	334	334	170-32	도	334	334	익산시	
5	170-68	대	18	18	170-68	대	18	18	㈜한국토지신탁	
6	170-69	대	16	16	170-69	대	16	16	㈜한국토지신탁	
7	170-70	대	24	24	170-70	대	24	24	㈜한국토지신탁	
8	170-71	대	29	29	170-71	대	29	29	㈜한국토지신탁	
9	170-74	전	123	123	170-74	전	123	123	㈜한국토지신탁	
10	170-75	대	18	18	170-75	대	18	18	㈜한국토지신탁	
11	170-76	도	48	40	170-76	도	48	40	익산시	
당초 합계			869	648	변경 합계		868	647		

익산시 고시 제2020-125호

제8기 익산시 지역사회보장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 고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위원명단 공개)에 의거 제8기 익산시 지역사회보장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익 산 시 장

1. 고시내용

□ 위원회명 : 제8기 익산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 위원명단

연번	위원회 내 직위	성 명	성별	위촉구분 (위촉직/당연직)	비 고
1	공공위원장	정헌율	남	당연직	
2	위원	전병희	남	당연직	
3	위원	한명란	여	당연직	
4	위원	임탁균	남	당연직	
5	위원	이해석	남	당연직	
6	위원	김영주	남	위촉직	
7	위원	엄양섭	남	위촉직	
8	위원	이영주	여	위촉직	
9	위원	유화영	여	위촉직	
10	위원	김병기	남	위촉직	
11	위원	정성길	남	위촉직	
12	위원	장지환	남	위촉직	
13	위원	한승호	남	위촉직	
14	위원	김혁중	남	위촉직	
15	위원	이현희	여	위촉직	
16	위원	이동수	남	위촉직	
17	위원	백종환	남	위촉직	

연번	위원회 내 직 위	성 명	성별	위촉구분 (위촉직/당연직)	비 고
18	위원	정학성	남	위촉직	
19	위원	최수현	여	위촉직	
20	위원	이순종	여	위촉직	
21	위원	황의성	남	위촉직	
22	위원	이건중	남	위촉직	
23	위원	박현자	여	위촉직	
24	위원	최지영	남	위촉직	
25	위원	신상훈	남	위촉직	
26	위원	박은아	여	위촉직	
27	위원	김 경	남	위촉직	
28	위원	박정순	여	위촉직	
29	위원	이미희	여	위촉직	
30	위원	조상윤	남	위촉직	
31	위원	김영록	남	위촉직	
32	위원	이재호	남	위촉직	
33	위원	이수경	남	위촉직	
34	위원	양현식	남	위촉직	
35	위원	최정길	남	위촉직	

□ 위원회명 : 제8기 익산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 위원명단

연번	위원회 내 직 위	성 명	성별	위촉구분 (위촉직/당연직)	비 고
1	위원장	임탁균	남	위촉직	
2	민간부위원장	김윤근	남	당연직	
3	공공부위원장	오은희	여	당연직	
4	위원	송호현	남	위촉직	
5	위원	이정선	여	위촉직	
6	위원	한귀영	남	위촉직	
7	위원	공미정	여	당연직	
8	위원	김설희	여	당연직	
9	위원	송정화	여	당연직	
10	위원	최경희	여	당연직	
11	위원	배원탁	남	당연직	
12	위원	정은주	여	위촉직	
13	위원	이경옥	여	당연직	

연번	위원회 내 직 위	성 명	성별	위촉구분 (위촉직/당연직)	비 고
14	위원	현승희	여	당연직	
15	위원	정경혜	여	위촉직	
16	위원	이남주	여	위촉직	
17	위원	고아라	여	위촉직	
18	위원	김한주	남	당연직	
19	위원	구명희	여	위촉직	
20	위원	박지언	남	위촉직	
21	위원	김희선	남	위촉직	
22	위원	강철수	남	위촉직	
23	위원	양지유	여	위촉직	
24	위원	김정석	남	위촉직	
25	위원	고석진	남	위촉직	
26	위원	채수훈	남	당연직	
27	위원	최성현	남	당연직	
28	위원	이지원	여	당연직	
29	위원	강명경	여	당연직	

연번	위원회 내 직 위	성 명	성별	위촉구분 (위촉직/당연직)	비 고
30	위원	강금진	여	당연직	
31	위원	이광미	여	당연직	
32	위원	최윤정	여	당연직	
33	위원	최영숙	여	당연직	
34	위원	김소철	남	당연직	
35	위원	박향란	여	당연직	
36	위원	박경희	여	당연직	
37	위원	이희경	여	당연직	
38	위원	손도일	남	당연직	

익산시 공고 제2020-1828호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승용차부제운행,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을 경감 항목으로 신설하여 우리시 교통량 감축을 유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

- 코로나19 이후 이와 유사한 사태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
- 「제14차 코로나19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경감조치 발표(2020. 4. 9.)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부담금, 교통량,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 등

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안 제3조)

다. 부담금의 경감 및 한시적 경감 등 (안 제4조, 제5조)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 재난 발생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 및 이행계획서 등 (안 제6조, 제7조)

마.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안 제8조)

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안 제9조)

사. 부담금 경감신청 및 미이행 조치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8길 1(남중동)
익산시 교통행정과
(전화 859-7264 ,팩스 859-5096)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교통행정과 주차정책계 담당자 (☏ 859-72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자(이하“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요일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1급지 소형)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 등)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

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당해연도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을 100분의 30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경감을 추가 적용한다.

제6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 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

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미이행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하여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 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1급지 소형)요금 이상의 주차 요금 징수(단, 시설물 입주자의 업무용 차량 제외) ○1시간 이상 무료주차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통근버스 운 영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통근버스를 운행 할 경우 *운행비율=(총좌석수/총종사자수)×100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출근시와 퇴근시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제공 단, 현금지급은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교통량감축 이행프로그램 종류(해당난에 기재)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이 행 계 획	비 고
계				
승 용 차 부제운행	10부제	10	통제방법 :	
	5부제	20	통제방법 :	
	2부제	30	통제방법 :	
	요일제	20	통제방법 :	
주차장 유료화		10	주차요금 징수방법	
통근버스운영		10	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대중교통이용자 보 조 금 지 급		10	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3.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기 간 : . . .부터 . . . 까지

4.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 : 자체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 신청내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당초계획	신청(실적)	비 고
계					
승 용 차 부제운행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10			
통근버스운영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0			
기 타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 통보서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율 결정사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신청	결정 경감비율	비 고
계					
승 용 차 부제운행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10			
통근버스운영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0			
기 타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공고 제2020-1838호

익산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심지역 주차장 이용자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등

○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용어 정의(안 제2조)

-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거주자우선주자장, 거주자·업무자 등의 뜻

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신청 및 배정(안 제3조 및 제4조)

- 우선주차장 신청방법 및 제외, 배정시기(정기·수시) 및 기준 등

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 및 납부방법(안 제5조)

- 우선주차장 운영시간(전일·주간·야간제) 및 주차요금 부과·징수

라.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의 의무 및 배정취소(안 제6조, 제7조)

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동사용(안 제8조)

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및 사고책임(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8길 1(남중동)
익산시 교통행정과
(전화 859-7263, 팩스 859-5096)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교통행정과 주차정책계 담당자 (☏ 859-7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안 1부. 끝.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3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하고, 주차우선권을을 부여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등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주차요금을 부여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거주자"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주차장 이용을 위해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말한다.
6. "공동사용"이란 주차장 배정자가 배정받지 못한 거주자 및 업무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선주차구획을 2대의 차량이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 ① 거주자우선주차(이하 "우선주차"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신청할 수 없다.

1.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업무자
2. 소유차량 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및 사용자
3. 법령 등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4. 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1톤 초과 차량 등)
5.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제4조(배정) ① 주차장 배정은 1세대 1대 차량에 한하여 배정하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사용개시 20일전까지 정기배정한다.

② 유휴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순위자(대기)명부에 따라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③ 배정할 수 있는 주차장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표의 배정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인에게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④ 국가유공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본인에게 1회에 한하여 우선 배정하며, 배점기준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정한 후 남은 주차장이 있을 경우 업무자에게 배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되면 시장은 순위자(대기)명부에 따라 상위자부터 원하는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희망주차장이 상위자에게 배정되었을 경우 인접주차장에 임의로 배정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납부방법) ①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은「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별표7과 같다. 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운영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부과·징수하며, 사용일수에 맞춰 일할 계산하여 처리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의2에 따른다.

제7조(배정취소) ① 사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차장을 전매, 양도, 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4.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장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시점부터 2년간 주차장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용) ① 주차장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임시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 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①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조치할 수 있다.

② 견인된 차량을 찾고자 할 경우 「익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에 대한 책임) 주차장 사용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남 / 여)	
	주 소 (사업장주소)				
	연 락 처	(부재 시)			
	거주유형	□ 거주자 □ 업무자	희망구획	1지망(구획)	2지망(구획)
신 청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량 명		
	소 유 자		관 계		
	등록주소		배 기 량		
제출 서류	필수사항	주민등록 초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필 요 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등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다음 서류의 제출이 생략됩니다.				

1 신청자격

①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 및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업무자로, 1세대당(1사업장 포함) 1개의 주차장(구획)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1톤 초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후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조건

① 주차장을 배정받은 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에서 운영시간 내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주차요금 미납 시, 주차장의 양도·전매, 목적 외 사용할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④ 배정받지 않은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조치될 수 있습니다.

⑤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변경 시 익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익산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뒷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목적: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과 배정 관련 확인, 요금납부를 위한 안내 서비스, 통계자료, 이력관리, 각종 민원처리, 환불신청 관련 확인 등**
2.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입일, 연락처, 차량정보, 장애여부, 국가유공자여부, 아동(자녀)수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본인이 삭제 요구시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처리 합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승계 신청대상으로 별도의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을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정부기관, 익산시, 거주자우선주차제시스템 관리업체**
2.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제공**
3. **제공하는 정보: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주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관련 사항**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취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Ⅲ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주차장 신청 및 배정과 관련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민원사무의 명칭: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및 관리**
2. **대상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동사용 신청서

신 청 인 (사용승인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공동사용 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주차장 번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표]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선정 배점표

기 준 항 목			점수	비고
우선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본인에 한하여 1회 우선배정		▸신청자 본인의 차량
순위배정	거 주 기 간 (30점)	○ 20년 이상	20점	▸주민등록상의 최종 전입일 기준
		○ 10 ~ 20년 미만	18점	
		○ 5 ~ 10년 미만	15점	
		○ 3 ~ 5년 미만	12점	
		○ 1 ~ 3년 미만	8점	
		○ 1년 미만	2점	
	주 차 거 리 (20점)	○ 50m 미만	20점	▸거주지와 주차장 간의 적선거리
		○ 50m ~ 100m 미만	18점	
		○ 100m ~ 150m 미만	15점	
		○ 150m ~ 200m 미만	12점	
		○ 200m 이상	9점	
	다자녀가정 (20점)	○ 자녀 5명 이상	20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만12세 이하
		○ 자녀 4명	18점	
		○ 자녀 3명	15점	
		○ 자녀 2명	12점	
		○ 자녀 1명	9점	
	배 기 량 (15점)	○ 1,000cc 미만	15점	▸자동차등록증 기준
		○ 1,000cc ~ 1,600cc미만	12점	
		○ 1,600cc ~ 2,000cc미만	9점	
		○ 2,000cc 이상	6점	
	대 기 시 간 (15점)	○ 3년 이상	15점	▸자동차등록증 기준
		○ 2년 ~ 3년 미만	12점	
		○ 1년 ~ 2년 미만	9점	
		○ 1년 미만	6점	
가점	연 령 (5점)	○ 만70세 이상	5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신청자 본인의 차량
		○ 만65세 이상	3점	
	국가유공자 (5점)	○ 상이등급 1 ~ 3급	5점	▸신청자 본인의 차량
		○ 상이등급 4 ~ 7급	3점	
	장 애 정 도 (5점)	○ 중증(1 ~ 3등급)	5점	▸신청자 본인의 차량
		○ 경증(4 ~ 6등급)	3점	

익산시 공고 제2020-1876호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익 산 시 장

1. 제정이유
   ○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생활문화센터의 수행 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9조)
      - 운영시간 : 평일 10:00 ~ 21:00 / 토요일 10:00 ~ 17: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사용료 : 다목적실 10,000원/1시간, 연습실·교육실 5,000원/1시간

※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3조)

마.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문화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전화 063-859-5296, FAX 063-859-5067)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가능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계 담당자(063-859-52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table>
<tr><td>입법예고명</td><td colspan="4">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td></tr>
<tr><td rowspan="2">의견 제출자</td><td>성 명
(개인/단체)</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td></tr>
<tr><td colspan="5"></td></tr>
</table>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익산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익산시 서동로4길 37(동산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교육, 전시, 공연 등 공간 지원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2. 교육실
3. 연습실
4. 사무실
5. 휴게실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第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익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第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第8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第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 3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 : 반환 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第10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第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익산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자체 운영 규정) 운영자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면>

<table>
<tr><th colspan="5">익산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th></tr>
<tr><td rowspan="5">신청인정보</td><td rowspan="2">신청인(단체)</td><td rowspan="2"></td><td>핸 드 폰</td><td></td></tr>
<tr><td>이 메 일</td><td></td></tr>
<tr><td>대 표 자 명</td><td></td><td>생년월일/성별</td><td>/(남·여)</td></tr>
<tr><td>신청인(단체)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td></tr>
<tr><td rowspan="7">신청내용</td><td>사용목적</td><td colspan="3"></td></tr>
<tr><td>구 분</td><td colspan="3">□ 공연/전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td></tr>
<tr><td>사용시설</td><td colspan="3"></td></tr>
<tr><td>사용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td></tr>
<tr><td>사용인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변경신청</td><td colspan="3">변경사유 :</td></tr>
<tr><td colspan="3">변경사항 :</td></tr>
<tr><td colspan="2">사 용 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기 타 서 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td></tr>
</table>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익산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E-mail),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익산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1년 : 그 외 정보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표]

익산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다 목 적 실	1시간	10,000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교육실 및 연습실	1시간	5,000	

※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익산시 공고 제2020-1890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을 따르도록 함.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을 명시하고자 함.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라. 웅포관광지 캠핑장의 2016~2019년 4년간의 운영수익 분석을 통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로 캠핑장 시설 운영에 있어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마. 웅포관광지 캠핑장을 금연시설로 만들어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을 따르도록 함 (안 제1·3·13조).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을 명시하고자 함 (안 제5조).

다. 국민권익 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의한 제도개선 요구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안 별표 3)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전화 859-7388, 팩스 859-506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담당자(859-73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웅포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익산시”를 “「관광진흥법」 제1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익산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익산시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 람

3. 100분의 20 감면

익산시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②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단, 익산시 시민은 제2항 "가"호부터 "다"호까지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제13조 중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 징수의 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제4조 관련)

(단위 :원/일)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비 고
		평일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오토캠핑장	1면당	15,000	20,000	
일반캠핑장	1면당	10,000	15,000	
광고용 게시대	1개당	10,000		게시기간(14일)

※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다음날 낮 12:00로 한다.

※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000원,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이후 1일 로 산정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별표 3]<개정 2013.09.25>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 당일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별표 4) <개정 2013.09.25>

캠핑장 이용자수칙

이 곳 웅포관광지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입 장
 o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o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o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납부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o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o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o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o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o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o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o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o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o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o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o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o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o 캠핑장 내부는 잔디와 수목의 보호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의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9. 홍 보
 o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o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o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o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o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ㆍ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관광진흥법」 제1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익산시 ---.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익산시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

4.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생략)	의 승인을 얻은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3. 100분의 20 감면 익산시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②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단, 익산시 시민은 제2항 “가”호부터 “다”호까지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요금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 징수의 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고 제2020-1902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운영중인 문화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발생으로 예방차원에서 휴관시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발생으로 휴관시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시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발생시 손실분(안 제8조의2에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0년 0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청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859-5426, 팩스 859-508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조남희(☏ 063-859-5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시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발생시 손실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 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ㆍ2. (생 략) <신 설>	제8조의2(운영지원) --. 1.ㆍ2. (현행과 같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시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발생시 손실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공고 제2020-1906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신설되는 금마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나. 상위 법령 기준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설되는 금마도서관의 운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조)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1)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 ⇒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58 익산시 선화로 6길 7(모현동)
익산시 시립도서관
(전화 859-7340, FAX 859-372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시립도서관 도서관진흥계장 (859-73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익산시립도서관(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황등도서관)”을 “익산시립도서관(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황등도서관, 금마도서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립도서관 (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황등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황등도서관, 금마도서관) --.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table>
<tr><td>입법예고명</td><td colspan="4">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d></tr>
<tr><td rowspan="2">의견
제출자</td><td>성 명
(개인/단체)</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td></tr>
<tr><td colspan="5"></td></tr>
</table>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공고 제2020-1940호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변경된 최저보험료 기준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조례제정 후 장기간이 지나 조문에 나타난 용어를 현행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개정) 익산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나. 목적 (안 제1조)

- 용어 변경 (차상위계층 → 저소득세대)

다. 정의 (안 제2조)

- 원안 제2조제1항의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세대"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
- 원안 제2조제2항 노인세대의 범위를 '세대주' 기준에서 '구성원' 기준으로 변경
- 현행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세대'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 (모.부자가정 → 한부모세대)

라. 지원대상 (안 제3조)

-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세대"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변경
-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조항 신설
- 용어 정비(모·부자 가정 → 한부모 세대)

마. 예산확보 및 지원 (안 제7조)

-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 집행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부분 신설

바.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9조)

- 보험료 지원의 중단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권리. 의무 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신설

3. 입법예고기간 : 2020. 7. 28 . ~ 2020. 8. 17.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
(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63-859-5397

❍ F A X : 063-859-5074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복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 (859-5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세대”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료 월별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 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

험공단 익산시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기타 생계곤란 세대중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의한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익산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

제6조(조사)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익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